



##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5. 7. 20 |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tempjunga@gmail.com

모든 경제학적 분석에는 경제학자 개인의 판단이 개입된다. 물론 가능한 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판단의 개입이 없을 수 없다. 집단 거주지의 경비 노동이 자동화·용역화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경비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용 집단을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도출한다면 당신은 믿을까?

가상의 상황 하나. 어떤 과격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이웃 나라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한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퍼포먼스가 이웃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거나 적어도 정치인의 망언을 사라지게 하리라는 믿음에서 화형식을 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화형식으로 인해 규탄하는 대상의 행위가 실제로 중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런 순진한 믿음이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안다. 심지어 당신은 그들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파하고 있다. 게임이론의 개념인 공유지식(또는 공통지식, common knowledge) 가정은 이와 같이 충족된다.

역사적 장면 하나.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명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1799년과 1800년에 노동자들의 회합을 음모로 간주하고 불법화한 결사금지법의 영향으로 비밀스럽고 적대적인 조합 활동이 늘었으며, 또한 각종 보호입법의 폐기로 입헌적 테두리 안에서 구제의 길도 모두 차단되었다. 당국은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스파이, 더 많은 체포와 처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했다. 동시에 산업자본가들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이용한 갖가지 수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지가 갈수록 악화되었고, 새로운 기계로 생산된 형편없는 품질의 제품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산업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기계 파괴 운동은 전쟁과 흉작에 의한 기근 상태에서 일어났지만 단순한 폭동보다는 혁명 의식을 지닌 규율 잡힌



조직 활동에 가까웠다. 러다이트 운동은 고삐 풀린 산업자본주의가 강요한 자유방임의 정치경제, 그로 인한 생계파탄과 다양하고 비열한 착취에 대항하여 옛 권리들을 부활시키고자 한 과거지향적인 만큼이나 미래지향적인 요구였다. 여기에서 기제는 공장체제의 침범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sup>1)</sup>

그러나 과격한 단체의 국기 화형식과 달리 러다이트 운동의 상징적 행위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다른 듯하다. 순진하고 ‘우매한’ 노동자들이 실업의 원인을 공장기계에서 찾고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이 순진하고 우매했으리라는 편견은 오염된 사료에 근거하는 역사가들의 왜곡된 해석을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실질적이지만 상징적인 러다이트의 항의는 공유지식이 아니다.

공유지식이 아닌데 공유지식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하며, 나아가 왜곡된 내용을 모두가 믿는 사실로 만든다. 그 중요한 기제를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권력(symbolic power)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sup>2)</sup> 상징권력은 권위나 명예 등을 매개로 한 권력의 작용과 재생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환자 개인의 나쁜 생활습관에 있다는 식의 막연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말은, 발화자가 의사일 때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하고 있는 장면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이에게 익숙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예. 오랫동안 ‘경제학자’ 들이 자신의 손과 입을 통해 퍼뜨려온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주장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나 SNS 토론장에서 공유지식의 지위를 부여받기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으면 역시 ‘경제학자’ 들의 상징권력에 기대고 있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가? 최저임금제는 고용정책이 아닌 임금정책이라는 핵심을 비껴가는 주장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자.

최저임금의 도입 또는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그 주장이 기대고 있는 신고전학과 경제학 이론을 표현한 그림 1의 왼쪽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이다.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이 그래프는 시장을 ‘그냥 내버려둘 때’ 달성되는 균형 임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되면 고용 규모가 축소됨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다양하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 아닌 수요독점이라는 설명이 대표적이지만, 수요공급 곡선이 단순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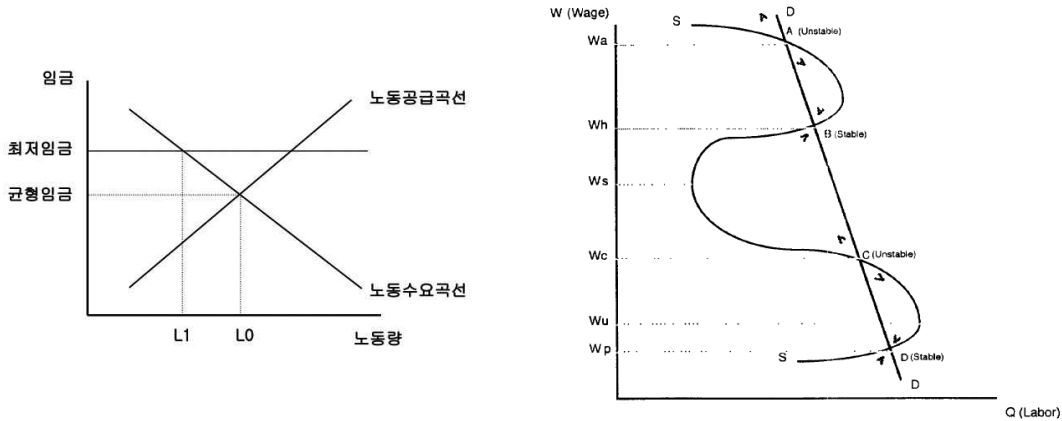
1) 톰슨, E. P.(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하)』, 나종일·노서경·김인중·유재건·김경옥·한정숙 옮김, 창비.

2) 다음을 참조. 부르디외, 피에르(2014),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 옮김, 나남.



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는 소득과 여가 간의 단순한 대체 관계가 아닌 결합생산(joint production) 관계를 가정했을 때 노동공급 곡선 형태와 다중 균형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 경우 저임금 균형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의 설정은 오히려 고용을 증대시킨다.

그림 1.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곡선



출처: 김수현(2011),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새사연 보고서; Prash, R.E.(2000), “Reassessing the Labor Supply Curve”, Journal of Economic Issues, 34(3), p.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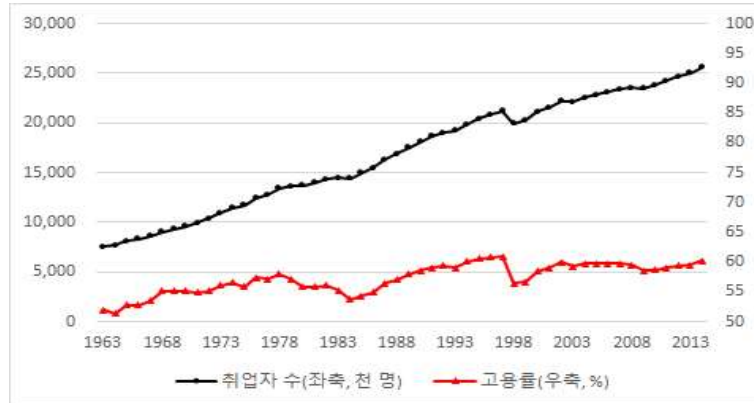
최저임금에 관한 경제학적 주장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이론’, ‘가정’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온다. 저 단순한 그래프 하나를 도출하는 과정에 이론이 동원되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엄격한 가정들이 존재하는 탓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에 끼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론을 이해하고 심지어 반박을 하려면 그 가정까지 완벽히 알고 변형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니 학문을 업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의의 타당성을 직접 판단하기 보다는 학자들이 도출한 결과를 믿는다.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기대하는 입장的人们은 부정적인 효과를 반박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는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심지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유지식이 아니다.

똑같이 훈련받은 경제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쟁해 온 역사는 짧게 잡아도 대략 반 세기동안 계속되었고, 인류의 역사에 최저임금제가 출현한 시기 이래로 보면 120년이 넘었다. 한국에서만 28년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운영해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명제에 대한 논쟁은 어쩌서 아직도 진행 중인가? 간단히 답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때에도 운영하는 중에도 꾸준히 제기된 이 주장이 경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주장이 살아있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 명제의 놀랍도록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이 주장의 단서에 있다.



“CETERIS PARIBUS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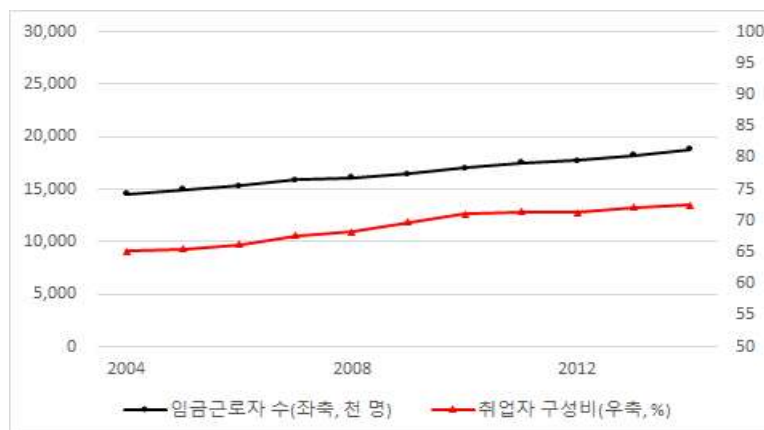
그림2.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kosis.kr).

그림 2에서 보듯이 취업자 수는 1963년 7,563천 명에서 2014년 25,599천 명으로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거의 꾸준히 늘어나 약 2.4배로 증대되었다. 상대적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완만히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52%에서 60.2%로 높아졌다. 취업자 수가 2배 이상 많아졌는데 고용률 인상폭은 9%p를 밑도는 이유는 그만큼 인구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진 데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최저임금제가 운영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고용률이 고만고만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를 감당할 정도로 일자리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도입과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아, 사용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는 제외해야 할까?

그림3. 임금근로자 수 및 구성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부가조사(kosis.kr).

그러나 임금근로자 수 및 취업자 중 구성비를 나타낸 그림 3에서 보더라도 고용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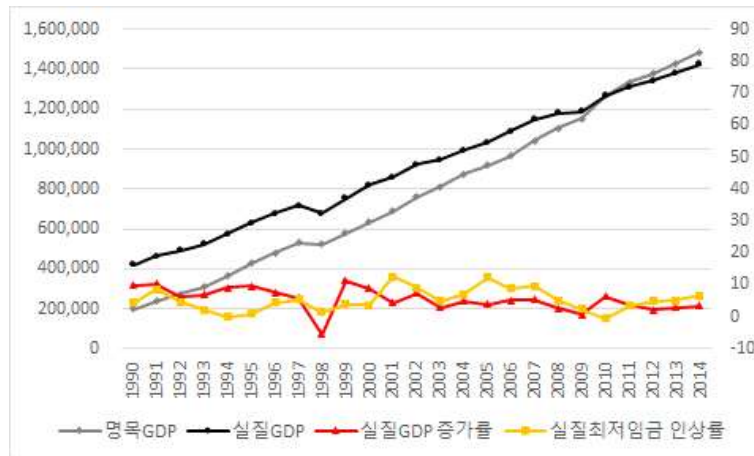




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늘었다. 임금근로자 수는 2004년 14,584천 명에서 2014년 18,776천 명으로 약 29% 늘었으며, 이는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빨라서 구성비가 7%p 이상 높아졌다. 즉, 어떻게 정의하든지 일자리 규모는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일자리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과정에 있다. 오늘 퇴직한 최 과장을 대신하여 승진한 김 대리, 김 과장이 되고 김 대리의 자리에 승진한 신입사원 송 대리가 앉는다면, 일자리의 순 증대는 0이다. 그러나 과장과 대리, 사원의 일자리는 전과 동일한 일자리가 아니다. 세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존재했던 일자리의 소멸이 아닌, 순 증대가 아닌 순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순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시인이거나 연금술사인 것일까?

그림4. 명목/실질GDP 및 GDP/최저임금 실질증가율



출처: 통계청, 「국민계정」 2010년 기준(kosis.kr).

주: 명목/실질GDP(좌축, 십억 원), GDP/최저임금 실질증가율(우축,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주장의 전제는 이 논의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다.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테 최저임금만 도입되거나 인상되는 현실은 역사에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다. 위 그림 4에서 보듯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꾸준히 커졌다. 과학적 실험을 할 때와 달리 인간 사회는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거나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효과를 실험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일자리의 순 증대 환경 하에서 최저임금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회귀분석 기법을 동원한다. 자신이 분석한 기법이 최저임금의 순수한 효과를 추출해 낸 결과인지 아닌지가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이다.



중요한 점이 있다. 복잡하고 정교한 회귀분석이라도 인과관계를 밝혀주지는 않는다. 우리 집에서 토끼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날부터 옆 집 개가 밤마다 짖기 시작했다고 하자. 옆 집 개가 짖는 이유는 정말 우리 집의 토끼 때문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우연히 일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인과관계로 해석할지 우연의 일치로 해석할지 여부는 관찰자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회귀분석을 하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학적 분석에는 경제학자 개인의 판단이 개입된다. 물론 가능한 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판단의 개입이 없을 수 없다. 집단 거주지의 경비 노동이 자동화·용역화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경비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용 집단을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도출한다면 당신은 믿을까? 고령화로 꾸준히 크게 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사회복지사 고용이 증대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은 믿을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청소년과 경비 노동자에 한정된 분석은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한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다는 점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지금까지의 실증분석 연구 다수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순수한 효과를 추출하는 것이 아직까지 어려운 것인지, 순수한 효과라는 것이 사실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직접 해주길 바란다. 상징폭력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의한 판단은 유일한 해독제이니 말이다.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7월 2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